

부산지방법원 2022. 6. 9 선고 2021가단32822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
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 고 A
변 론 종 결 2022. 5. 12.
판 결 선 고 2022. 6. 9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지분에 관한 2021. 3. 1.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3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. 4. 22. 접수 제 382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사실은 당사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, 강제1, 2호증(가치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5차전356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, 2015. 7. 16.자 'B은 원고에게 452,577,812원 및 그중 270,549,251원에 대하여는 2014. 7. 23.부터, 182,027,590원에 대하여는 2014. 10. 15.부터 각 2015. 7. 22.까지는 연 12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'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, 위 지급명령은 2015. 8. 6.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고 한다)의 소유자이던 C이 2021. 3. 1. 사망하여 망인의 자녀인 B, D,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1/3지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는데, B, D,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 무렵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'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'라고 한다)를 하였고,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1. 4. 22. 접수 제 38252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그런데 B은 2021. 3. 1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이외에는 재산이 없었다.

2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차전3562호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,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.

3.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

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,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(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다2788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은 망 C의 상속인이고 그 상속분은 1/3인 사실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망 C의 상속인들인 B, D, 피고는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, 위 협의로 B은 무자력 상태가 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,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의 상속분 1/3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B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, 피고가 B에게 283,000,000원을 대여하였고, 망 C에게도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왔던 점, 망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도록 유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,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던 것이어서, 피고에게는 B의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장애사유인 수익자의 선의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한 부족이 심화되어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미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.

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지분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 사건 판결로써 취소하는바, 위와 같은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,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/3지분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21. 4. 22. 접수 제 382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.

4. 결론

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성진

별지